

# 2026 총회 보고서

## 제15차 (사)월드디아코니아

- \* 일시 : 주후 2026. 2. 26(목) 10:30
- \* 장소 :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성전 시온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TEL: 02-747-1225 FAX: 02-764-1225  
www.koreandiakonia.org kdkd1225@hanmail.net



# ■ 목차

|                       |    |
|-----------------------|----|
| 01. 조직                |    |
| 가. 법인 이사 명부 .....     | 4  |
| 02. 회의록               |    |
| 가. 총 회 .....          | 5  |
| 나. 이사회 .....          | 8  |
| 03. 2025년 사업보고 .....  | 11 |
| 04. 2025년 감사보고 .....  | 14 |
| 05. 2025년 결산보고 .....  | 16 |
| 06. 2026년 사업계획 .....  | 17 |
| 07. 2026년 예산(안) ..... | 20 |
| 08. 법인 정관 .....       | 21 |

## ■ 정기총회

○ 의장 : 오정현 목사 ((사)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

|                           |       |
|---------------------------|-------|
| 1. 개회기도                   |       |
| 2. 대의원점명 .....            | 사무국장  |
| 3. 개회선언 .....             | 의 장   |
| 4. 회순채택 .....             | 다 같 이 |
| 5. 전회의록 .....             | 사무국장  |
| 6. 2025년 사업 및 결산 보고 ..... | 사무국장  |
| 7. 2025년 감사 보고 .....      | 감 사   |
| 8. 사무총장 선임 보고 .....       | 대표단장  |
| 9. 안건토의 .....             | 사무총장  |
|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
| 10. 기타 토의 .....           | 다 같 이 |
| 11. 광 고 .....             | 사무총장  |
| 12. 폐회기도                  |       |

# 1. 조직

## 가. 법인이사 명부

| 연번 | 직위  | 성명  | 소속          | 임기                      |
|----|-----|-----|-------------|-------------------------|
| 1  | 이사장 | 오정현 | 사랑의교회       | 2025.03.23 ~ 2028.03.22 |
| 2  | 이사  | 김태영 | 한국교회봉사단     | 2025.03.23 ~ 2028.03.22 |
| 3  | 이사  | 한기채 | 중앙성결교회      | 2025.03.23 ~ 2028.03.22 |
| 4  | 이사  | 천 환 | 예일교회        | 2025.03.23 ~ 2028.03.22 |
| 5  | 이사  | 전태식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 2025.03.23 ~ 2028.03.22 |
| 6  | 이사  | 고은범 | 새노래명성교회     | 2025.03.23 ~ 2028.03.22 |
| 7  | 이사  | 김동국 | 대전시민교회      | 2025.03.23 ~ 2028.03.22 |
| 8  | 이사  | 김대석 | 상상아이앤씨      | 2025.03.23 ~ 2028.03.22 |
| 9  | 이사  | 김영철 | 월드비전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0 | 이사  | 김주선 | 천안명성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1 | 이사  | 김철승 | 시은소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2 | 이사  | 성진호 | 달성제일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3 | 이사  | 이세일 | 대전충신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4 | 이사  | 이 호 | 통인익스프레스     | 2025.03.23 ~ 2028.03.22 |
| 15 | 이사  | 장봉림 | 신성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6 | 이사  | 정은주 | 예원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7 | 이사  | 현동호 | 파리바게트 신림양지점 | 2025.03.23 ~ 2028.03.22 |
| 18 | 이사  | 황형택 | 새은혜교회       | 2025.03.23 ~ 2028.03.22 |
| 19 | 감사  | 류재돈 | 영남지역노회협의회   | 2025.03.23 ~ 2027.03.22 |
| 20 | 감사  | 윤한진 | 예장통합 부총회장   | 2025.03.23 ~ 2027.03.22 |

### ※ 정관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회의록

### 가. 총회 회의록

#### (사)월드디아코니아 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11:40 - 12:38 / 장소 : 새은혜교회

#### ■ 회의

##### 1. 회원 점명 및 개회

의장이 대의원을 점명하니 72명 중 30명 참석, 14명 위임으로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고하고 정기총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 2. 회순 채택

의장이 회순 채택 가부를 물으니, 유인물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을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4. 보고사항

###### 가.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24년 사업 및 결산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 나. 2024년 감사보고

2024년 감사 결과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다.

##### 2. 결의사항

가.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나. 아래와 같이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발의한대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 현행  | 개정(안)  |
|---|--|
| <b>제2조(목적)</b>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u>외교통상부</u>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b>제2조(목적)</b>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u>외교부</u>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b>제6조(회원의 권리)</b><br><u>①</u>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u>②</u>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b>제6조(회원의 권리)</b><br><u>①</u> <b>회원은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 &lt;신설&gt;</b><br><u>①</u> -> <u>②</u> <b>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b>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b>&lt;자구 수정&gt;</b><br><u>②</u> -> <u>③</u> <b>&lt;현행과 같음&gt;</b> |
| <b>제15조(총회의 구성)</b>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  | <b>제15조(총회의 구성)</b> <현행과 같음>   |

| <p>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p> <p>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u>각 지회에서 2인, 각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u></p> <p>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p>   | <p>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u>회원에서 파송된 자로 한다. &lt;자구 수정&gt;</u></p> <p>② &lt;현행과 같음&gt;</p>   |             |  |    |    |   |    |             |                        |  |   |  |    |         |    |    |   |    |             |  |  |
|--|--|-------------|--|----|----|---|----|-------------|------------------------|--|---|--|----|---------|----|----|---|----|-------------|--|--|
| <p><b>제19조(의결정족수)</b></p> <p>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u>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 <p><b>제19조(의결정족수)</b></p> <p>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u>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t;자구 수정&gt;</u></p>   |             |  |    |    |   |    |             |                        |  |   |  |    |         |    |    |   |    |             |  |  |
| <p><b>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b>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u>3월</u>에 공개해야 한다.</p>   | <p><b>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b>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u>4월</u>에 공개해야 한다. &lt;자구 수정&gt;</p>   |             |  |    |    |   |    |             |                        |  |   |  |    |         |    |    |   |    |             |  |  |
| <p><b>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b></p> <p>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p>  | <p><b>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b></p> <p>① 법인은 회계연도 <u>2월</u>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자구 수정&gt;</p> <p>② &lt;현행과 같음&gt;</p> |             |  |    |    |   |    |             |                        |  |   |  |    |         |    |    |   |    |             |  |  |
| <p><b>제40조(법인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u>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p>  | <p><b>제40조(법인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u>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lt;자구 수정&gt;</p>        |             |  |    |    |   |    |             |                        |  |   |  |    |         |    |    |   |    |             |  |  |
| <p><b>제41조(정관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재적회원 과반수</u>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p><b>제41조(정관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u>총회구성원 과반수</u>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자구 수정&gt;</p>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p> <p>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191 1467 774 1601"> <thead> <tr> <th></th> <th>분류</th> <th>금액(평가액)</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금</td> <td>50,000,000원</td> <td>신한은행<br/>100-026-786840</td> <td></td> </tr> </tbody> </table>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1 | 현금 | 50,000,000원 | 신한은행<br>100-026-786840 |  | <p>별지</p> <p>&lt;계좌번호 변경&gt;</p> <p>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821 1467 1404 1601"> <thead> <tr> <th></th> <th>분류</th> <th>금액(평가액)</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금</td> <td>50,000,000원</td> <td>기업은행<br/>022-088591-01-018<br/>사)월드디아코니아</td> <td></td> </tr> </tbody> </table>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1 | 현금 | 50,000,000원 | 기업은행<br>022-088591-01-018<br>사)월드디아코니아 |  |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1  | 현금   | 50,000,000원 | 신한은행<br>100-026-786840                 |    |    |   |    |             |                        |  |   |  |    |         |    |    |   |    |             |  |  |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1  | 현금   | 50,000,000원 | 기업은행<br>022-088591-01-018<br>사)월드디아코니아 |    |    |   |    |             |                        |  |   |  |    |         |    |    |   |    |             |  |  |

다. 이사장 연임  
오정현 목사의 이사장 연임을 가결하다.

라. 임원 선임  
임기만료 이사를 2025년 3월 23일자로 아래와 같이 선임하기로 하다.

- ◇ 임기만료 이사 (2022.03.23. ~ 2025.03.22)  
오정현 김태영 노영상 전광식 한기채 천 환 김성이 전태식 신관우 이형규
- ◇ 신입 이사 (2025.03.23. ~ 2028.03.22.)

고은범 김동국 김대석 김주선 김영철 김철승 성진호 이세일 이 호  
장봉림 정은주 황형택 현동호

- ◇ 연임 이사 (2025.03.23. ~ 2028.03.22.)  
오정현 김태영 한기채 천 환 전태식
- ◇ 퇴임 이사 (2022.03.23. ~ 2025.03.22)  
김성이 노영상 신관우 이형규 전광식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같은 날 오후 12:38이었다.

2025년 3월 12일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나. 법인 이사회 회의록

(사)월드디아코니아 2025년 이사회 회의록

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11:00 - 11:40 / 장소 : 새은혜교회

■ 회의

오정현 이사장의 사회로 회의를 시작하다.

1. 개회기도

김순미 장로(공동단장)가 개회기도를 하다.

2. 회원점명 및 개회

사무총장이 회원을 점명하니 참석 5명, 위임 1명으로 정관 제24조에 의거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정원이 되어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다.

- 참석 : 오정현 김태영 한기채 전태식 김성이
- 위임 : 천환
- 불참 : 전광식 노영상 신관우 이형규
- 배석 : 김철훈(사무총장)

3. 전회의록 채택

전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2025년 총회 보고사항

- 1) 2024년 사업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2) 2024년 감사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3) 2025년 결산보고를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4) 2025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김철훈 사무총장이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2025년 총회 부의사항 승인

- 1) 정관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회원의 권리)<br>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br>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권리)<br>① 회원은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 <신설><br>① -> ② 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구 수정><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5조(총회의 구성) <현행과 같음>  |

| <p>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각 지회에서 2인, 각 전문사업단에서 선출된 2인으로 한다.</p> <p>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p>   | <p>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b>회원에서 파송된 자로 한다. &lt;자구 수정&gt;</b></p> <p>② &lt;현행과 같음&gt;</p>   |             |   |    |    |   |    |             |                        |  |   |  |    |         |    |    |   |    |             |   |  |
|--|--|-------------|---|----|----|---|----|-------------|------------------------|--|---|--|----|---------|----|----|---|----|-------------|---|--|
| <p><b>제19조(의결정족수)</b><br/>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p><b>제19조(의결정족수)</b><br/>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b>총회구성원</b>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b>출석</b>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lt;자구 수정&gt;</b></p>  |             |   |    |    |   |    |             |                        |  |   |  |    |         |    |    |   |    |             |   |  |
| <p><b>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b> 당해 사업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b>3월</b>에 공개해야 한다.</p>  | <p><b>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b> 당해 사업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b>4월</b>에 공개해야 한다. <b>&lt;자구 수정&gt;</b></p>   |             |   |    |    |   |    |             |                        |  |   |  |    |         |    |    |   |    |             |   |  |
| <p><b>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b></p> <p>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p>  | <p><b>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b></p> <p>① 법인은 회계연도 <b>2월</b>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lt;자구 수정&gt;</b></p> <p>② &lt;현행과 같음&gt;</p> |             |   |    |    |   |    |             |                        |  |   |  |    |         |    |    |   |    |             |   |  |
| <p><b>제40조(법인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p>   | <p><b>제40조(법인해산)</b>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b>총회구성원 3분의 2이상의</b>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b>&lt;자구 수정&gt;</b></p>         |             |   |    |    |   |    |             |                        |  |   |  |    |         |    |    |   |    |             |   |  |
| <p><b>제41조(정관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 <p><b>제41조(정관변경)</b>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b>총회구성원</b>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lt;자구 수정&gt;</b></p>   |             |   |    |    |   |    |             |                        |  |   |  |    |         |    |    |   |    |             |   |  |
| <p>별지</p> <p>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197 1406 778 1570"> <thead> <tr> <th></th> <th>분류</th> <th>금액(평가액)</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금</td> <td>50,000,000원</td> <td>신한은행<br/>100-026-786840</td> <td></td> </tr> </tbody> </table>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1 | 현금 | 50,000,000원 | 신한은행<br>100-026-786840 |  | <p>별지</p> <p><b>&lt;계좌번호 변경&gt;</b></p> <p>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p> <table border="1" data-bbox="820 1431 1406 1552"> <thead> <tr> <th></th> <th>분류</th> <th>금액(평가액)</th> <th>내용</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현금</td> <td>50,000,000원</td> <td><b>기업은행</b><br/><b>022-088591-01-018</b><br/><b>사)월드디아코니아</b></td> <td></td> </tr> </tbody> </table>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1 | 현금 | 50,000,000원 | <b>기업은행</b><br><b>022-088591-01-018</b><br><b>사)월드디아코니아</b> |  |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1  | 현금   | 50,000,000원 | 신한은행<br>100-026-786840                                      |    |    |   |    |             |                        |  |   |  |    |         |    |    |   |    |             |   |  |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1  | 현금   | 50,000,000원 | <b>기업은행</b><br><b>022-088591-01-018</b><br><b>사)월드디아코니아</b> |    |    |   |    |             |                        |  |   |  |    |         |    |    |   |    |             |   |  |

2) 이사장 연임의 건

오정현 이사장의 연임을 총회에 부의하기로 가결하다.

3) 임기만료 이사 및 사임 이사 선임의 건은 아래와 같이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하기로 하기로 하고, 미진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 임기만료 이사 (2022.03.23. ~ 2025.03.22)

오정현 김태영 노영상 전광식 한기채 천 환 김성이 전태식 신관우 이형규

◇ 신임 이사 (2025.03.23. ~ 2028.03.22.)

고은범 김동국 김대석 김주선 김영철 김철승 성진호 이세일 이 호 장봉림  
정은주 황형택 현동호

◇ 연임 이사 (2025.03.23. ~ 2028.03.22.)

오정현 김태영 한기채 천 환 전태식  
◇ 퇴임 이사 (2022.03.23. ~ 2025.03.22)  
김성이 노영상 신관우 이형규 전광식

## 6. 안건토의

### ■ 폐회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에 관한 절차와 결의를 마쳤으므로 의장이 폐회를 제안하다. 만장일치로 허락하매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권태진 목사의 기도 후 폐회하니 같은 날 오전 11:40이었다.

2025년 3월 12일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

### 3. 2025년 사업보고

#### 1.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 가. 사랑의 쌀 지원

- 1) 상시지원 : 몬탈반 디아코니아 선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Barangay Paltok center, Eastbelbew center, Mpbmc Main center, San Rafael center, Southville center와 따알락 화산 난민촌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선별하여 사랑의 쌀을 매회 2Kg 500~1,000포 나눔
- 2) 특별지원 : 부활절 및 성탄절, 교회와 주민들에게 나눔

##### 나. 태풍 풍령으로 인한 선교센터 유지 및 보수

- 1) 개요 : 2025년 11월초에 발생한 태풍 갈매기와 풍령으로 인하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슈퍼 태풍급으로 발달한 후, 필리핀 루손섬과 타이완을 차례로 강타. 140만 명 이상이 대피했으며, 최소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 연속 2차례나 발생한 슈퍼태풍으로 인하여 내륙에 위치한 선교센터도 영향을 받아 선교센터 곳곳이 유실 수리 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태양열 전기 시설 설비 지원

- 1) 개요 : 2025년 전송료 인상 등으로 인해 연중 높은 수준인 13.47페소를 기록, 급상승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각 선교센터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각 선교센터의 태양열 전기 시설 설비를 지원
- 2) 지원센터 : Barangay Paltok center  
Eastbelbew center  
Mpbmc Main center  
San Rafael center  
Southville center

##### 라. 지원내용

- 1) 1차 : 2025년 1월 15일(수) | 사랑의 쌀 지원
- 2) 2차 : 2025년 3월 24일(목) | 사랑의 쌀 지원
- 3) 3차 : 2025년 4월 10일(월) | 사랑의 쌀 지원
- 4) 4차 : 2025년 4월 21일(월) | 부활절 사랑의 쌀 지원
- 5) 5차 : 2025년 6월 12일(목) | Southville center, 따알락 화산 사랑의 쌀 지원
- 6) 6차 : 2025년 7월 2일(금) | 따알락 화산 사랑의 쌀 추가지원
- 7) 7차 : 2025년 7월 19일(금) | Eastbelbew center 사랑의 쌀 지원
- 8) 8차 : 2025년 8월 11일(금) | Southville center 사랑의 쌀 지원
- 9) 9차 : 2025년 8월 31일(금) | 몬탈반 디아코니아센터 태양열 전기 시설 설비 지원
- 10) 10차 : 2025년 9월 13일(금) | Eastbelbew center 사랑의 쌀 추가지원
- 11) 11차 : 2025년 10월 10일(금) | Eastbelbew center 태양열 전기 시설 설비 지원
- 12) 12차 : 2025년 11월 14일(금) | 따알락교회 태풍피해 지원
- 13) 13차 : 2025년 12월 18일(금) | 따알락교회 태풍피해 추가지원

## 2. 캄보디아 지부 사업보고

### 가. 개요

- 베트남 난민 희망학교 건축 및 예배공동체 형성 추진
- 어린이, 청소년 선교를 위해 캄보디아 공립학교와의 연결 강화
- 선교현장 목회자 및 성도 신앙교육과 훈련 강화

### 나. 월별 사역 보고

1월 : 2025년 장학사업 시작

중,고등학생 30명 / 월 600달러 장학금 지급(매월 지급)

대학생 10명 / 학기당 1인 평균 500달러 지급 (프놈펜 10명, 캄땡츠낭 8명)

한국어수업 주 2회 진행 시작 : 한국어과 학생 중심으로 참여(이경미 선교사)

끄발뜩 지역 한아봉사회 의료봉사 지원 / 1.7-8

트널교회 '다' 초등학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진행 / 1.14-15

젊은이사역부 리서치팀 방문 : 1.20-24.

2월 : 브링업인터네셔널 지원 이동치과진료 프로젝트 진행 / 월 1회 실시

어린이 전도프로그램 실시 (캄땡하이시온, 돛낙꺼꼬교회) / 2.18-19.

자녀교육 특강(캄땡츠낭 기독교연합회) 지원 / 2.26.

꿈꾸는 도서관 프로젝트 중간 점검 / 삼성꿈장학재단

3월 : 전체 사역자 및 가족 MT(약 50명) / 3.27-28

꿈꾸는도서관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제출 (삼성꿈장학재단)

4월 : 삼성꿈장학재단 한국독서연수프로그램 5명 참석 / 4.1-8.

: 여음 소잔(쁘라삿), 생 사른(아엑리펠), 소에악간냐(뽀언땃), 반짚티, 최수철

최수철 선교사 한아봉사회 방문 / 4.14.

캄땡랭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 4.20.

캄땡츠낭 기독교연합회 임원회 지원 / 4.26.

5월 : 캄땡츠낭 베트남 수상촌 난민 교회 지원 - 희망학교 완공 / 5.5.

캄땡츠낭 쫘끼리 군 까루나교회 헌당식 지원 / 5.15.

라오스 코디네이터 조현상 선교사 일행 선교현장 방문 / 5.27.

끄발뜩교회 헌당식 및 의료선교팀 방문 준비

6월 : 순천제일교회 선교팀 선교현장 방문 / 2025.06.02-05

끄발뜩교회 예배당 헌당식 / 2025.06.05

의료선교팀 방문 무료진료(끄발뜩교회) / 2025.06.05-07.

캄땡츠낭 기독교연합회 목회자 세미나 인도 / 2025.06.16.

캄땡랭 지역 교회 연합 부흥회 / 2025.06.17-18

7월 : 마을 북 페스티벌 (떡포 끄돌초등학교, 캄땡랭 뽀언땃 초등학교) / 205.06.30-07.01

캄땡츠낭 꿈도서관 프로젝트 / 삼성꿈장학재단 프로젝트(2025-2026)로 재선정

8월 : 젊은이사역부 선교팀 사역 / 7.29-8.5

감뽕뽕(감뽕뽕, 뽕뽕뽕, 뽕뽕뽕, 다)초등학교 사역 및 시앰립 청소년 수련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종생 목사 현장 방문 / 2025.08.18-20.

캄보디아-태국 국경분재 피해 부상자 지원 (감뽕즈낭기독교연합회) / 2025.08.15

9월 : 잔 텃 형제 치과(임플란트) 한국연수(광주 상무수치과) 지원 / 2025.09.07-26.

프츄뽕 뽕뽕 특별 프로그램 진행 / 2025.09.20.

10월 : 크랑스끼어 형제교회 (임천교회 지원) 예배당 공사 시작

## 5. 월드프렌즈 KOICA-NGO봉사단 단원 선발

가. 개요 :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 NGO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를 지원하고 봉사단원의 전문성과 현지 NGO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현장 사업 실행, 현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전개를 목적으로 함

나. 파견기간 :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 (원격1개월+현장11개월)

다. 파견국가 및 지역 : 캄보디아 프놈펜, 꾀뽕즈낭

라. 협력 : 월드디아코니아 캄보디아 지부(지부장 최수철 목사)

마. 주요활동 : 어린이 도서출판/독서교육/독서교육 메뉴얼 작성

## 6. 연대사업

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원단체

## 7. 홍보사업

가. 홈페이지 운영

국문 홈페이지 <http://www.koreandiakonia.org>

영문 홈페이지 <http://en.koreandiakonia.org>

나. 온라인 홍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D1225>

유 튜 브 <http://www.youtube.com/c/한교뽕KD>

다. 언론광고

## 감 사 보 고 서

(사)월드디아코니아 귀하

본 감사는 2026년 1월 15일 13시부터 귀 기관의 2025년도  
중에 이루어진 재정 및 행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1. 15.

감사 윤 한 진 (인)

감사 유 재 돈 (인)



별 첨 : 감사의견서 1부 끝.

# 감 사 의 견 서

## 2. (사)월드디아코니아

가. 감사에 임하면서 다음의 장부 및 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1) 수입 지출에 따른 각종 대장 및 입출금 전표
- 2) 각종 영수증 확인 및 편철상태
- 3) 수령한 세금계산서 편철보관상태
- 4) 각종 공문서 수발 및 정리상태
- 5) 지출 계정별로 타당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나. 수입 및 지출(전년도 이월금포함)을 검토한바

2024년도 이 월 금 : 53,153,257원

2025년도 총 수입금액 : 130,111,930원

2025년도 총 지출금액 : 129,899,483원

잔 액 : 53,365,704원입니다.

(잔액 : 통장잔고 53,292,502원 /보유현금 73,202원)

다. 감사결과 월별 재정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각종 부책 등의 정리도 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입 지출에 관한 각종 영수증 은행잔고증명 등 관계 자료를 검토한바 정확하였습니다.

## 5. 2025년 결산보고서

### 사)월드디아코니아 결산서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이월금 (단위 : 원)

| 관   | 항   | 목   | 2024년 이월금  | 산 출 근 거 (비고) |
|-----|-----|-----|------------|--------------|
| 이월금 | 이월금 | 이월금 | 53,153,257 | 전년이월금        |

수입부 (단위 : 원)

| 관    | 항    | 목          | 합 계                | 산 출 근 거 (비고)      |
|------|------|------------|--------------------|-------------------|
| 후원금  | 후원금  | 경상비후원금     | 40,000,000         | 경상비 후원            |
|      |      | 일반후원금      | 3,330,000          | 일반 후원             |
|      |      | 필리핀재해구호후원금 | 36,050,000         | 필리핀 재해 구호 지정후원    |
|      |      | 캄보디아 지정후원금 | 46,864,950         | 캄보디아 지정후원         |
|      |      | <b>소 계</b> | <b>126,244,950</b> |                   |
| 접수입  | 접수입  | 이자수입       | 57,100             | 예금이자수입            |
|      |      | 잡이익        | 8,400              | 자동이체, 원단위 할인 등    |
|      |      | <b>소 계</b> | <b>65,500</b>      |                   |
| 선납세금 | 선납세금 | 선납세금       | 7,810              | 선납 법인세(공제 초과분) 환급 |
| 예수금  | 예수금  | 예수금        | 3,793,670          | 인건비에 대한 세금 공제분    |
|      |      | <b>합 계</b> | <b>130,111,930</b> |                   |

지출부 (단위 : 원)

| 관     | 항     | 목          | 합 계                | 산 출 근 거 (비고)                     |
|-------|-------|------------|--------------------|----------------------------------|
| 사무비   | 운영비   | 지급수수료      | 1,257,880          | 증명서 발급 수수료/법인결산, 임원 및 정관변경 수수료 등 |
|       |       | 세금과공과금     | 2,101,330          |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
|       |       | <b>소 계</b> | <b>3,359,210</b>   |                                  |
|       | 인건비   | 급여         | 30,567,940         | 직원급여                             |
|       |       | 복리후생비      | 1,364,320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
|       |       | <b>소 계</b> | <b>31,932,260</b>  |                                  |
|       |       | <b>합 계</b> | <b>35,291,470</b>  |                                  |
| 사업비   | 기획사업  | 필리핀선교센터    | 36,241,976         | 필리핀 문탈반 디아코니아선교센터 운영지원           |
|       |       | 캄보디아       | 47,114,927         | 캄보디아 내 베트남 사랑학교 및 믿음교회 건축사업 후원   |
|       |       | <b>소 계</b> | <b>83,356,903</b>  |                                  |
|       | 기타사업  | 사업운영관리비    | 7,500,000          | 사업운영관리                           |
|       |       | <b>소 계</b> | <b>7,500,000</b>   |                                  |
|       |       | <b>합 계</b> | <b>90,856,903</b>  |                                  |
| 재산조성비 | 재산조성비 | 선납세금       | 7,660              | 이자수입에 대한 선납 법인세                  |
|       |       | <b>소 계</b> | <b>7,660</b>       |                                  |
|       |       |            | <b>합 계</b>         | <b>7,660</b>                     |
| 예수금   | 예수금   | 예수금        | 3,327,300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 공제분              |
| 미수금   | 미수금   | 미수금        | 416,150            | 연말정산(소득/지방소득세) 환급액               |
|       |       | <b>합 계</b> | <b>3,743,450</b>   |                                  |
|       |       | <b>총 계</b> | <b>129,899,483</b> |                                  |

|             |            |             |
|-------------|------------|-------------|
| 2025년<br>결산 | 이월금        | 53,153,257  |
|             | 총수입        | 130,111,930 |
|             | 총지출        | 129,899,483 |
|             | 잔액         | 53,365,704  |
| 지정기금        | 기본자산       | 50,000,000  |
|             | 차기이월 사업준비금 | 3,365,704   |
| <b>총잔액</b>  |            | -           |

## 6. 2026년 사업계획

### 1. 조직사업

- 가. 사업목표
  - 임원 및 회원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정기 임원회의 및 임원 간담회
  -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 라. 사업예산
  - 2,000,000원

###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 가. 사업목표
  - 지진, 태풍 전쟁 등으로 인한 해외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 나. 사업기간
  - 2026년 해외 재해발생시
- 다. 사업내용
  -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라. 사업주관 : 한국교회봉사단 해외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20,000,000원

### 3.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 가. 사업목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 및 긴급구호
  - 재해민 구호 후속 사업으로 재해민 자립지원 방안 마련
  -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건물 유지 보수
- 나. 사업기간
  - 2026년 자연재해 재난 발생 요청 건 진행
  - 2026~2029 재해 발생시
- 다. 사업내용
  - 재해 발생시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고 초기 긴급구호 사업 진행
  - 신속한 초기 실사 및 구호활동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조성
  - 재해 모금활동 및 구호/복구사업
  - 재해 후 자립지원을 위한 후속사업 개발
  - 어린이 장학사업
- 라. 사업주관

- 월드디아코니아 재난지원본부
- 마. 사업예산
  - 40,000,000원

#### 4. 캄보디아 사업

- 가. 사업목표
  - 캄보디아 내 베트남 이주민 아동 교육(베트남 한사랑학교)환경 지원 등
-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캄보디아 이주 베트남 어린이 교육센터 지원 사업
  - 캄보디아 내 이주민 및 현지인 지원 후원
  - 꿈꾸는 도서관 프로젝트
  - 학사관 운영 및 장학사업
  - 월드프렌즈코리아 KOICA-NGO봉사단 파견사업
- 라. 사업주관 : 월드디아코니아 해외사업본부
- 마. 사업예산
  - 5,000,000원

#### 5. 홍보사업

- 가. 사업목표
  - 단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업
  - 국외 재난 지역 교육사업 및 직업(기술)학교 후원 캠페인
-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다. 사업내용
  - 온라인 홍보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운영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페이스북, 유튜브)
  - 언론사 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배포 및 현장 동행취재 지원
    - 해외재난지역 모금 캠페인 전개(신문 및 방송 광고 진행 등)
  - 홍보 대사 선정 및 홍보
  - 홍보물 제작
    - 홍보용 리플렛, 홍보키트 제작
    - 각종 자료집 제작 및 도서발행(도서출판 KD)
- 라. 사업예산
  - 2,000,000원

#### 6. 연대사업

- 가. 사업목표
  - 재난지역 한인선교사회와 재난 현장지원 네트워크 협력

○ 국내·외 재난 지원 유관 교단 및 선교 단체들과 협력

나.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다. 사업내용

-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 2) 유엔세계식량계획(WFP)
- 3)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4) 한국교회총연합(UCKK)
- 5) 한국군선교연합회(MEAK)
- 6) 한아봉사회(KSSA)
- 7) 기독교환경운동연대(GREENCHURCH)
- 8) 각 교단 재난 재해 담당부서(사회봉사부, 구제부, 국내전도부 등)
- 9) 교계연합단체

라. 사업예산

○ 2,000,000원

## 7. 2026년 예산(안)

### (사)월드디아코니아 2026년 예산(안)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 수입부

(단위 : 원)

| 관    | 구 분            | 2026년 예산금액  |
|------|----------------|-------------|
| 이월금  | 전년이월금(기본자산 제외) | 3,365,704   |
| 후원금  | 일반후원금          | 45,000,000  |
|      | 사업후원금          | 60,000,000  |
| 기타수입 | 잡이익,기타수입       | 3,800,000   |
| 총 계  |                | 112,165,704 |

#### ■ 지출부

(단위 : 원)

| 관   | 구 분                   | 2026년 예산금액  |
|-----|-----------------------|-------------|
| 사무비 | 운영비                   | 3,405,704   |
|     | 업무비                   | 2,000,000   |
|     | 인건비                   | 35,760,000  |
|     | 소 계                   | 41,165,704  |
| 사업비 | 1. 조직사업               | 2,000,000   |
|     | 2. 해외 재해구호 사업         | 20,000,000  |
|     | 3. 필리핀 재해구호 및 자립지원 사업 | 40,000,000  |
|     | 4. 캄보디아사업             | 5,000,000   |
|     | 5. 홍보사업               | 2,000,000   |
|     | 6. 연대사업               | 2,000,000   |
|     | 소 계                   | 71,000,000  |
| 총 계 |                       | 112,165,704 |

※(예금)기본자산 50,000,000원

## 8. (사)월드디아코니아 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월드디아코니아”(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어명칭은 ‘World Diakonia’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장,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재지변과 각종 사고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이재민과 피해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구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시 해외 각 도시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외 각종 재난에 대한 구호 및 복구사업
2. 해외 자원봉사운동의 전개 및 교육
3. 해외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 및 지원
4. 국내외 기부문화 확산사업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수익사업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 기관, 단체로 한다.  
② 가입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대의원을 파송한다.

- ② 회원이 파송한 총회대의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감사 2인
3. 이사는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아래 규정에 의하여 선출, 위촉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① 대의원은 법인의 이사, 감사, 회원에서 파송된 자로 한다.
- ② 1항에 해당되지 않은 대의원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되는 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수의 1/3을 넘지 못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

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 공개)** 당해 사업 년도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년 4월에 공개해야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2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장 사무 부서

**제37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실행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제39조(전문기구 설치와 운영 규정)**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전문사업단을 둘 수 있다.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총회에서 정한다.

## 제8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12년 2월 6일 제정

2018년 5월 21일 개정

2025년 3월 12일 개정

<별지>

<(사)월드디아코니아 기본재산 목록>

|   | 분류 | 금액(평가액)     | 내용                                  | 비고 |
|---|----|-------------|-------------------------------------|----|
| 1 | 현금 | 50,000,000원 | 기업은행 022-088591-01-018<br>사)월드디아코니아 |    |